

간접시계장치 설치대상 및 기준(제50조제1항 관련)

차종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특수 자동차			
		차량총중량 5톤 이하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차량총중량 3.5톤초 과 7.5톤이 하	차량총중량 7.5톤초 과 12톤 이하	차량총중량 12톤초 과
실내 후사장치	설치 필요 - 단, 시계 범위영역에 유리 외 다른 재질 인 경우 제외	설치 가능		설치 필요 -단, 시계 범위 영역 에 유리 외 다른 재질인 경 우 제외	설치 가능		
실외 후사장치Ⅱ	설치 가능	설치 필요. - 운전자석 및 승객 석 각각 1개씩 설치 할 것		설치 가능	설치 필요 - 운전자석 및 승객석 각각 1개 씩 설치할 것		
실외 후사장치Ⅲ	설치 필요 - 운전자석 및 승객석 각각 1개 씩 설치할 것 - 승객석은 실외 후사 장치Ⅱ로 대체 가 능	설치 불가		설치 필요 - 운전자석 및 승객석 각각 1개 씩 설치할 것 - 승객석은 실외 후사 장치Ⅱ로 대체 가 능	설치 불가		
광각 후사장치	설치 가능 - 운전자석·승객석 각각 1개씩 설치하거나 운 전자석 또는 승객석에 1개 설치할 것			설치 필요 - 근접시계장치 설 치가 가능한 경우, 운전자석 및 승객 석에 설치할 것 설치 가능 -근접시계장치 설 치가 불가능한 경우, 운전자석 및 승객 석에 설치 가능		설치 필요 - 운전자 석 및 승객석 각각 1 개 씩 설치 할 것	
근접 시계장치	설치 가능 -거울의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 이에 설치가 가능한 경우, 운전자석 및 승객 석 각각 1개씩 설치 가능			설치 필수 -승객석에 1개 설치할 것 설치 가능 -거울의 경우에는 운전자석 및 승 객석 모두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 이에 설치가 가능한 경우, 운전 자석에 1개 설치 가능			
앞면 시계장치	설치 가능 -거울의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가 가능한 경우, 1개 설치 가능					설치 필요 -거울의 경우에는 지 상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가 가능 한 경우, 1개 설치할	

차종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특수 자동차			
		차량총중량 5톤 이하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차량총중량 3.5톤초 과 7.5톤이 하	차량총중량 7.5톤초 과 12톤 이하	차량총중량 12톤초 과
						것	

주)

1. 거울의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2.4m 이상의 높이에 설치가 가능한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는 별표 5의7 제1호 마목의 확장된 근접시계장치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2. 광각후사장치, 근접후사장치, 앞면시계장치의 시계범위는 직접 또는 간접시계장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만족할 수 있다.
3. 실외후사장치Ⅱ란 별표 5의7 제1호 나목의 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간접시계장치를 말한다.
4. 실외후사장치Ⅲ란 별표 5의7 제1호 다목의 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간접시계장치를 말한다.
5. 앞면시계장치는 차체 구조상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m 미만 높이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5의7 시계범위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실내후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별표 5의7의 간접시계장치 시계범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